

제12조(배상책임) ①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게이트볼장을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구 고시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지역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 를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 및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 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 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악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 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 위를 할 수 없음 문의(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관리과, T. 000-000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침수위선(적색) →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 까지 2m이상 ○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 태풍루사, 2002) ○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악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 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 관리과 T. 000-000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 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를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 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4호부터 제13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획홍보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125. 국·시·구정시책의 홍보
- 126.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 127. 자유수호 주민제도
- 128.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한 업무
- 129. 구보(구정신문) 발간·배부
- 130.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131. 기타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총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며,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하고, 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또한, 국장 산하에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중 제17호 및 제20호를 삭제하고, “제18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제21호부터 제63호까지”를 “제19호부터 제61호까지”로 하고, “제62호부터 제6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 63.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64. 상용직 노조 지원업무

6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 정책개발, 기획
2. 학교녹화사업 지원
3. 학교 도서 지원
4.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5.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운영
6.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7.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국어 특성화 사업 추진
9.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운영
10.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운영
11. 평생학습센터설치·운영
12.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3. 평생학습 조성에 관한 사항
14. 관내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관리·운영 지원
16. 주민정보화 교육
17. 외국인 지역 적응 교육 등 지원
1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9. 기타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중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30호부터 제44호까지”를 삭제하며,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를 “제22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제45호부터 제46호까지”를 “제24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며, “제26호부터 제2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행정선 관리
27.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총괄

제9조(종전의 제8조)중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세외수입 집계 및 수납처리
41. 세외수입의 수입 및 결산
42. 세외수입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43. 수입증지 및 영수증서 관리
44.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조정
45.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